



2013년 10월 1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이기형 과장(509-7258), 장혁조 연구관(509-7259)

국가표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

- KS규격 정비 및 기술기준-KS의 일치화 추진
- 범부처 참여형 KS 개발시스템으로 전환

□ 표준(KS) 개발과정에 관련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고 KS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함에 따라 국가표준운영체계가 큰 폭으로 개선될 예정임.

○ KS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근거하여 1962년에 도입한 국가표준으로서 그간 우리 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나,

- 기술기준과 표준의 이원화* 및 국가표준의 양적성장**에 따라, 기업 불편 및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

* 미국, EU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인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109개 법정인증제도의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음

** 연도별 국가표준 종수 : ('01) 12,596 → ('04) 19,865 → ('09) 23,372 → ('12) 24,129

□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: 성시현)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,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의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함

○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(조립형 형강, 맨홀 뚜껑, 도자기용 점토 등)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,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할 예정임

-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(타자기,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)은 폐지하고, 소비자 안전 보호 또는 국제기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중임

- 또한 재질과 공법을 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할 예정임

- * KS D 3771(용융 55%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강관) 등 40여종은 소재와 공정을 규정

- ** KS L 2004(접합유리)의 제조설비중 접합설비(오토클레이브, 대당 10억원)를 필수 설비에서 삭제

- 이번에 추진하는 KS 규격 정비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, 정비대상 규격은 약 8000여종이 될 것으로 예상됨

- 아울러,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서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함

- * ‘국가표준심의회’에서 부처별 기술기준의 KS 도입을 총괄·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(「국가표준기본법」 개정 추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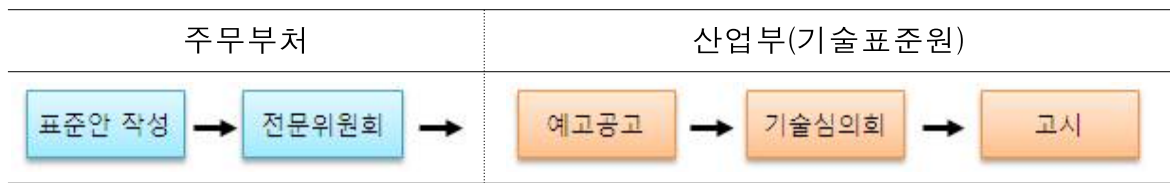
- 현재 기표원은 전기용품(TV, 냉장고 등)과 공산품(가구, 압력솥 등)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의 일치화를 추진중임(‘14.3 완료 예정)

- * 동일제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인증과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불편을 완화하고 중복인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

- 지금까지는 KS 제·개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기표원에서 수행해 왔으나,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에서 표준(안)을 개발하도록 표준 제·개정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

- 즉, KS표준의 제·개정안 작성 및 전문위원회 운영은 소관부처에서, 기술심의회 운영·고시 등 총괄업무는 산업부에서 수행토록 함 (부처협의 : ~’14.2, 「산업표준화법」 시행령 개정 : ’14 상반기)

< KS 제·개정 절차 개선방향 >



- * 현재 농림축산식품부(농축산식품, 185종) 및 해양수산부(수산식품, 38종)의 경우, KS안 개발 권한을 위탁 운영중

□ 금번 제도정비는 기업의 부담완화 함께 기술개발 촉진 등 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붙임 : 국가표준운영체계 정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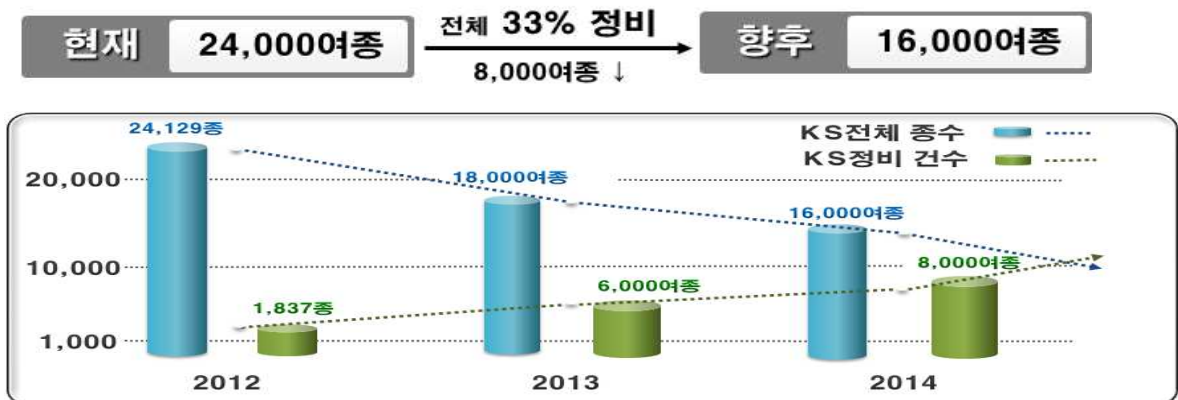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장혁조 연구관(☎ 02-509-72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KS규격 정비

□ 국가표준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KS정비 추진

- 정부는 법정인증 및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하고,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KS규격을 대폭 정비



* 정비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'14년까지 순차적으로 KS규격을 정비

- 품질관리,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은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단체표준으로 전환 (조립형 형강, 맨홀 뚜껑, 도자기용 점토 등)

* 특정산업 및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격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,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민간표준기반 조성

◇ 단체표준기관의 체계적인 육성, 지원

- 단체표준 등록 간소화(기술심의 및 예고 폐지 등)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표준 제정 유도

* 단체표준 등록현황('12년) :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95개 단체, 1,880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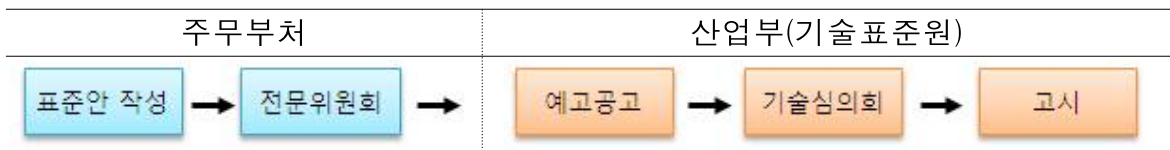
- 시장활용도가 낮거나 국제표준과 공존하는 KS규격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추진 (타자기, 자기 카세트테이프, 시약, 도료 등)
- 재질과 공법을 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특정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 추진(알루미늄 아연도금 합금 도금강판, 접합유리 설비 등)

나. 국가표준 거버넌스 체계 구축

□ KS의 범부처 확산 및 국가표준 일원화

-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여, 소관부처에서 KS를 개발하도록 국가표준 운용체계를 개편 (관련부처 협의 : '13~, 산표법 시행령 개정 : '14)
- *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분야 KS(495종) 위탁 → 타부처로 위탁범위 확대

< KS 제·개정 절차 개선방향 >



- 기술기준과 KS 상호 간의 효율적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에서 KS 규격을 우선 반영토록 하는 원칙 마련
- 부처별 소관 기술기준에 대해 매년 자체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
- * 부처별 기술기준의 산업표준 반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에 총괄·조정·심의 권한 부여 (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추진)

□ 안전기준 부합 KS의 제·개정

- 안전기준을 포함하도록 KS를 제·개정하고, 안전기준은 해당 KS를 인용
- 전문위원회, 기술심의회를 거쳐 KS 제·개정 고시 ('14.2)
-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기준운영요령 개정 ('14.3)

<안전기준 부합 KS의 제·개정 절차>



* 안전기준 일치화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KS의 제·개정 절차는 현행과 동일